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의 금융기관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방안

| 글로벌 이슈 |

김혜란 연구원

요약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은 은행, 보험회사,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제안함. 개편안은 이사회 구성원의 역량, 이해 상충 관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과 중요하지 않은 금융기관과의 비례성 등을 다루고 있음. 또한 이번 개편안은 특별히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2025년 3월 호주건전성감독청(이하 'APRA')은 은행, 보험회사, 퇴직연금 사업자(RSE licensees)의 건전한 지배구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편안을 제안함¹⁾
 -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건전성은 위험관리의 핵심으로 부실한 지배구조는 부정행위, 손실, 실패로 이어지기도 함
 - APRA는 지난 10년 동안 지배구조, 문화, 보수 및 책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고, APRA가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직접 개입한 기업들에서는 지배구조 관행이 개선되는 성과를 보임
 - 그러나 여전히 기준 미달의 관행이 존재하여, APRA는 현재 드러난 부실 관행을 바로잡고 지배구조 기준에 모범 사례를 반영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2025년 2월 기준 APRA의 지배구조 위험 등급에 의하면 규제 대상 기관의 약 68%는 APRA의 위험 감수 범위 내에 있으나, 32%는 위험 감수 범위를 벗어나 있고, 특히 8%는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APRA의 개편안은 ① 이사회 구성원의 역량, ② 적격성 및 적정성 준수, ③ 이해 상충 관리, ④ 이사회 평가, ⑤ 역할 명확화, ⑥ 이사회 산하 감사 및 리스크 위원회 구성 현행 요건 확대 적용 및 폐지, ⑦ 임기 제한, ⑧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지배구조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8개 영역에 대해서임
 - ① 이사회 구성원의 역량 관련해서 금융기관은 전체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필수 역량을 정의하고 문서화해야 하며, 현재 이사회의 역량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문성 향상과 승계 계획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하며, 기관별로 적절한 역량 요구 수준의 차이는 인정됨
 - ② 금융기관 책임자의 적격성 및 적정성 요건에 대한 기본 기대치를 강화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고위 관리자에게도 높은 기준을 적용함
 - 기본적인 적격성과 적정성 요건은 개인의 핵심 역량, 경력, 지식, 기술, 정직성과 청렴성이 포함되나, 실제·잠재적·인지된 이해 상충, 범죄 기록, 과거 조직의 재무 성과 및 평판 등을 추가하여 요건을 강화하고, 구체화함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기준은 은행과 보험회사는 건전성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고, 퇴직연금 사업자는 자산이 300억 호주 달러를 초과하거나, APRA가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기관임

1) APRA(2025. 3.), "Governance Review - Discussion Paper"

- ③ 은행과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사전에 인식하고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치를 취해야 함
 - APRA는 동일 그룹 내 역할 및 공급업체와의 관계 등에서 복합적으로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에 적용되는 기준을 은행 및 보험 부문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 ④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은 3년마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사회 및 이사 개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함
- ⑤ 이사회, 이사회 의장, 고위경영진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 이사회가 전략적 감독과 리스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며, 특정 정책·절차 중 위임 가능 항목을 더 명확히 제시하고자 함
 - 현재 이사회 안건이 운영 문제에 집중되어 전략적·미래지향적 논의가 부족하며, 이사회 의장의 역할에 대해 APRA에서 기존에 감사·리스크·보상위원회라는 역할로 국한하고 있어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없음
- ⑥ 은행 및 보험회사 이사회가 별도의 감사 및 리스크 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현행 요건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요건을 폐지하여 부담을 해소하고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함
- ⑦ 이사의 임기가 길어질수록 도전적 사고와 리더십 역량이 약화될 수 있어 규제 대상 금융기관의 비상임이사 임기를 최대 10년으로 제한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갱신은 미래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

○ 특히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APRA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임

- 현행 건전성 기준은 은행 및 보험회사의 이사회는 독립적인 의장과 과반수 이상의 독립 이사를 포함해야 하며, 모회사 또는 그룹 내 다른 자회사 이사가 은행 및 보험회사의 독립 이사를 겸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독립 이사는 실질 주주, 과거 경영 참여 등 회사와 실질적인 사업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모회사로부터 파생된 자회사에 대해서는 비상근 이사 과반수 확보라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음
- APRA는 현행제도가 그룹 내 이해충돌 여지가 있고, 독립 이사가 채권 등을 보유한 경우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봄
 - 독립 이사가 그룹 전체의 이해를 우선시하여 은행과 보험회사의 이익을 저해하는 판단을 내린 경우가 있었음
- 개정안은 독립 이사의 요건에 해당 회사 및 그룹의 임직원이 아님을 명시하고, 은행과 보험회사의 이사회는 최소 2명 이상의 독립 이사(의장 포함)를 확보해야 하며, 이들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서 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음
 - 또한 은행과 보험회사 또는 그룹이 발행한 채권 등의 실질적 지분을 보유한 자 또한 독립 이사로 볼 수 없으며, 은행과 보험회사 이사회에 적용되는 독립 이사 과반수 요건을 APRA 또는 해외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는 모회사의 자회사 이사회에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함

○ APRA는 위와 같은 개편안을 통해 비례성을 준수하고, 규제 완화도 병행하고자 하며, 지배구조 개편안 시행까지 4단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 제안 ⑥은 중요 금융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제안 ⑤에 의하면 이사회가 일부 APRA 요구사항을 위원회 또는 경영진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가 전략적이고, 본질적인 지배구조 이슈에 집중할 수 있음
- 2025년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2026년 초안 기준 및 지침 마련, 2027년 최종 기준 및 지침 발표, 2028년에는 시행하고자 함